

책임준공확약서

수신: 주식회사 위편당 및 주식회사 위편당대부

이 책임준공확약서(이하 “이 확약서”)는 주식회사 [] (이하 “차주”)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697-2, 697-3번지 토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및 다중주택 신축사업(이하 “본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대주로서 주식회사 위편당 및 주식회사 위편당대부(이하 “대주”), 시공사로서 주식회사 [] 건설(이하 시공사를 통틀어 “당사”) 사이에서 2019년 8월 28일 체결한 대출약정금 금 일십오억원(W1,500,000,000)의 대출약정서(이후 수정, 변경, 추가된 것을 포함하고 이하 “대출약정(서)”)와 관련됩니다. 이 확약서에서 사용된 모든 용어는 이 확약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대출약정서에서 사용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보유합니다.

당사는 본건 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대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약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1. 당사는 2020년 [2]월 [2]일 이내(이하 “책임준공기간”)에,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사가 차주 또는 신탁회사의 부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소정의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 기타 이에 준하거나 유사한 절차(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부실정후기업의 관리 등 부도사유 포함)의 개시 등의 사유, 또는 공사비 지급 지연, 공사도급계약의 불이행, 민원, 인허가의 지연 또는 보완 등 기타 여하한 사유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지연할 수 없고, 미시공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제외한다)을 완료하여야 하고, 사용승인필증의 사본을 대주에게 제출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 당사는 사업건물이 신축될 예정인 사업부지의 상태(사업부지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포함함)에 대하여 이미 충분한 검토를 하였고, 사업부지가 사업건물을 건설하는데 법적·사실적으로 적정한 부지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3. 당사는 사업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의 비용과 책임하에 이를 보수할 것이며 만약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는 차주 기타 대주가 지정하는 제 3자가 당사의 비용으로 위 하자를 보수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4. 당사는 사업건물의 건설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문제(소음, 분진 등), 안전사고, 인근시설 및 주민을 포함한 제 3자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 및 손실 기타 제반민원에 따른

